

언어능력 가점(제50조제1항제2호 관련)

| 구분  | 국어 능력(0.3) |     |     | 외국어 능력(0.3)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| 1급         | 2급  | 3급  | 토익<br>870점 이상 | 토익<br>790점 이상 | 토익<br>730점 이상 |
| 평정점 | 0.3        | 0.2 | 0.1 | 0.3           | 0.2           | 0.1           |

비고

1. 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 가점은 합산하여 0.3점을 넘을 수 없고,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가점 평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.
2. 국어 능력의 가점은 「국어기본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평정한다. 다만,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가점 평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3. 토익 외의 영어 능력 평가시험이나 일본어, 중국어 및 러시아어 등 외국어 능력 평가시험에 대한 평정점은 위 표에 따라 토익점수에 부여되는 평정점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